

예 산 총 칙

2018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392,426,988	41,772,810
일반회계	1,057,746,351	31,732,391
특별회계	334,680,637	10,040,419
공기업특별회계	254,066,734	7,622,002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112,236,183	3,367,085
상수도사업특별회계	63,894,439	1,916,833
하수도사업특별회계	77,936,112	2,338,083
기타특별회계	80,613,903	2,418,417
주택사업특별회계	3,648,190	109,446
의료급여사업특별회계	3,661,045	109,831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269,913	8,097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3,349,335	100,480
교통사업특별회계	14,014,031	420,421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31,955,620	958,669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23,715,769	711,473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 세입·세출 예산 " 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 채무부담행위조서 " 와 같다. (해당없음)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 계속비사업조서 " 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 명시이월사업조서 " 와 같다. (해당없음)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8,191,118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 및 특별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24,7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